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23 선고 2019가단4198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3. E

4. F

변론 종결2020. 1. 17.(피고 1, 2, 4에 대하여), 무변론(피고 3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20. 1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9,468,884원 및 그 중 금 48,760,353원에 대하여 2001. 9. 2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가. 피고 C 주식회사, D, F :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나. 피고 E: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진환

별지